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 성주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최적의 시설을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성주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 내용

-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평 일 : 06:00 ~ 21:00, 토요일 06:00 ~ 18:00
 · 휴관일 : 매년 1월 1일, 설, 추석 연휴기간, 매주 일요일, 그 외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나.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강사 등의 근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기 타

-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4. 4. 23 ~ 2014. 5. 12(20일간))

5. 검토내용

○ 본 조례(안) 제정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성주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 총 17조로 구성되었으며 시설 운영 및 사용허가, 시설사용과 관련한 배상 및 보상 책임, 시설 임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제17조 규정에 의한 규칙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해석상의 논란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에고 및 규제심사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